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황명선ㆍ이재관ㆍ박민규

송옥주 • 김현정 • 김남근

박희승 · 송재봉 · 정동영

김영진 · 권향엽 · 염태영

박용갑 · 임광현 · 이해식

장경태 · 강득구 · 김우영

오세희 • 박지혜 • 유건영

채현일 · 임미애 · 이광희

박균택 • 문금주 • 홍기원

한민수 전진숙 의원

(29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불법촬영물과 그복제물을 제작·배포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,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,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, 심지어 중·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,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 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의2제4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·소지·시청 ·저장·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		
	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・소지・		
	<u>시청·저장·판매한 자는 3년</u>		
	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	
	의 벌금에 처한다.		
<u>④</u> 상습으로 제1항부터 <u>제3항</u> 까	<u>⑤</u> <u>제4항</u>		
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			
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			
다.			